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120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11월 13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 11. 13.~2024. 11. 26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민철	1981.○.18	0178200274100007438	₩13,381,200	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22번길 ○○
2	신호선	1965.○.06	0178200274100006850 0178200274100000224	₩6,549,000	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○○
3	강숙영	1964.○.05	0178200274100003371	₩31,620,000	인천시 남구 재념이길 ○○
4	노종구	1973.○.21	0178240274100000120	₩3,952,500	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50번길 ○○
5	주식회사 믿음정보 통신	280211-0232799	0178240274100000613	₩7,588,800	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7번길 13, 702호(의정부동)
6	김성원	1982.○.23	0178240274100000815	₩3,090,000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평로 ○○
7	한영만	1956.○.11	0178240274100001631	₩521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2길 ○○
8	서동현	1983.○.27	0178240274100002727	₩3,862,500	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6길 ○○
9	남미선	1969.○.16	0178240274100003044	₩3,000,000	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○○
10	주식회사 니즈원소프 트	141111-0056024	0178210274100000347	₩4,458,000	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534, 407 호
11	주식회사 인스네트웍 스	131111-0213535	0178220274100000033 0178220274100000025	₩4,262,820 ₩198,000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길 14, 3층
12	박주성	1985.○.17	0178240274100001662	₩3,862,500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○○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3	정서근	1959.○.07	0178200274100007163 0178200274100000552	₩13,620,100 ₩7,585,200	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 75 번길 ○○
14	주식회사 원소프트	124411-0187618	0178240274100002712	₩4,782,000	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 번길 36
15	주식회사 비에스오 토프라임	110111-6333069	0178240274100000250 0178210274100004464	₩16,245,000	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 번길 36
16	주식회사 에리컴퍼니	110111-7029344	0178240274100001118	₩11,140,000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 번길 21, 에프 1005 호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, 11층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